

2007년 중국의 수출입 정책 변경내용

2 0 0 7. 1

< 요약 >

2006년 중국의 교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1조 7천6백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 3대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무역규모와는 걸맞지 않게 다양한 수출입 통관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중국 교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자원은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전에 치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7년도 중국의 관세율변화, 수출입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 등 전반적인 통관관련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하였다.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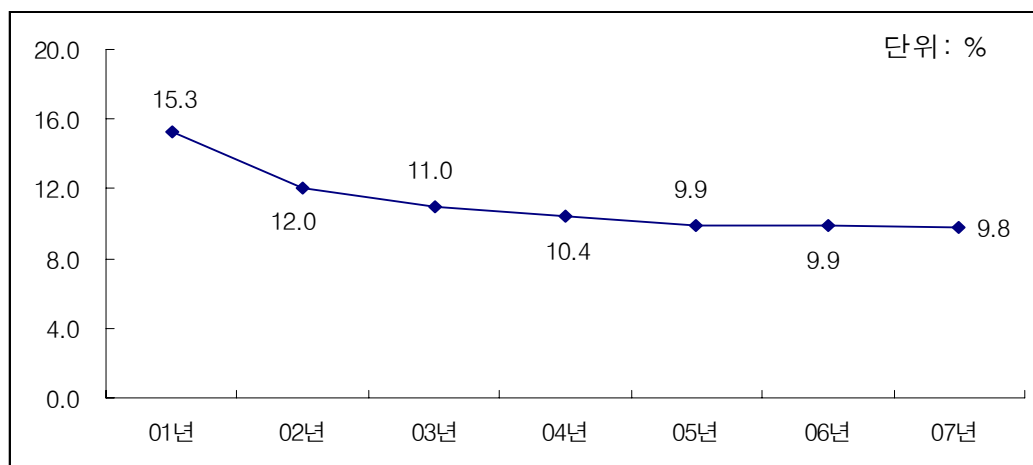
북 경 지 부

I. 관세율 조정

1. 수입관세율 : 9.8%로 인하

중국은 WTO 가입시 협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부터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조정 한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HS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다시 낮추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9.9%에서 9.8%로 떨어졌다. 이중 농산품은 15.2%, 공산품은 8.95%로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2001년 WTO가입 당시 15.3%에서 현재 9.8%로 5.5%p인하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평균수준(3.9%)에는 훨씬 못 미치며 한국(8%)에 비해서도 아직은 높은 편이다.

<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수입관세율 변경추이



한편 세계해관기구의 ‘상품명칭 및 코드 조정제도’의 개편과 중국의 산업세수정책 및 수출입관리수요의 변화로 기존의 수출입 코드 중 1천 600여개(HS코드 8단위 기준)를 조정하여 2007년 현재 총 세목은 7,646 개에 달한다.

1) 최혜국세율 인하 : 총 44개 세목

딸기, 폴리에틸렌, 기초화장품 등 44개 품목에 한해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세목은 지난해 말 최혜국 세율을 그대로 적용, 변함이 없다. 이들 44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지난해의 10.4%에서 2007년에는 9.2%로 1.2%p가 인하됐다.

【사례】 최혜국 세율인하

- 딸기 : 19.8%('06년) → 18.4%('07년),
- 폴리에틸렌 : 9.1%('06년) → 7.8%('07년)
- 기초 화장품 : 12.8%('06년) → 9.7%('07년)

※44개 세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2) 농산품, 화학비료 등에 수입관세쿼터관리 : 45개 품목

밀, 옥수수, 벼와 쌀, 당, 양모, 방모사(毛條), 면화 등 농산품과 요소, 인산이암모늄(磷酸二胺) 및 복합비료 등 총 8개 종류 45개 세목(HS 8 단위)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수입관세쿼터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중 화학비료의 쿼터(300만톤 규모) 세율은 종전대로 1%이며 쿼터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50%로 세율이 대폭 뛰어 오른다. 면화는 쿼터 내에서는 1%에 불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2007년 중국의 수입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품목	HS 코드(10단위)	관세쿼터 배정량(만톤)	수입세율 (쿼터내)	수입세율 (쿼터외)
1	화학 비료	31053000 (인산이암모늄)	690만톤	1%	50%
		31052000 (복합비료)	345만톤		
		31021000(요소)	330만톤		
2	양모	51011100	28.7만톤	1%	38%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3	방모사 (Carded Wool)	51051000	8만톤	3%	38%
		51052100			
		51052900			
4	식용설탕	17011100	194.5만톤 (국영무역비중: 70%)	15%	50%
		170112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5	밀(小麥)	10011000	963.6만톤 (국영무역비중: 90%)	1%	65%
		10019010			
		10019090			
6	옥수수	10051000	720만톤 (국영무역비중: 60%)	1%	20%
		10059000			65%
7	쌀	10061011	532만톤 (국영무역비중: 50%)	1%	65%
		10061019			
		10061091			
		10061099			
		10062010			
		10062090			
		10063010			
		10063090			
		10064010			
		10064090			
8	면화	52010000	89.4만톤 (국영무역비중: 33%)	1%	6%- 40%
		52030000			

3) 종량세 또는 복합세 : 냉동닭 등 55개

냉동닭과 맥주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천연고무 수입시에는 선택세를 적용하여 20%의 종가세와 톤당 2,600위안의 종량세 중 낮은 세액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4) 수입잠정세율 : 총 309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309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은 주로 석탄, 석자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 광도(光導)섬유페인트 등 중요 원자재나 핵심부품 및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사이트:

http://www.mof.gov.cn/news/file/lkzds1_20061227_20061227.pdf

(2007년 중국의 잠정수입관세 적용품목)

5) 협정세율 적용

중국은 관련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기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가. 아·태무역협정 세율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국가의 일부 상품(1,673개 품목)

나. 중국-아세안 FTA 세율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일부 상품

다.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 : 칠레의 일부 상품

라. 중국-파키스탄 FTA 조기관세자유화 협정세율: 파키스탄의 일부 상품

다. 영세율 적용 : 홍콩이거나 마카오산으로 원산지표준 심사비준을 거친 제품에 대해 적용.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15종의 신선한 과일에도 영세율을 적용

6) 특혜세율 : 아프리카 등 30여개 후진국

아프리카 등 30여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영세율 등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즉, 원산지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수단 공화국,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2. 수출관세율 조정

1) 잠정수출세율 적용 : 174개 품목

철강재 등 174개 품목에 한해 수출세 인하 또는 신규부과 등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사례】 잠정수출세율 변화

- 뱀장어 : 20% → 10%로 인하
- 벤젠 : 40% → 0%로 취소
- 요소 : 30%-15% 부과(1분기-3분기 : 30%, 4분기 : 15% 적용)

한편 2006년 11월 1일부로 중국정부는 이미 110개 수출품목에 한해 수출잠정세율을 부과 또는 조정한 바 있으나 이번 발표된 174개 품목에 대부분 중복적으로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출잠정세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정세율 5% : 석탄, 코크스, 원유 등 4개 에너지류 제품
- 잠정세율 10% : 철합금, 생철 등 30개 철강제품
- 잠정세율 15% : 동, 전해알루미늄 등 11개 유색금속제품 등

※ 관련사이트 : http://www.mof.gov.cn/news/file/ckspzd_20061227_20061227.pdf

(2007년 중국의 잠정수출관세 적용품목 : 174개)

II. 수출입허가증·쿼터관리

1. 수입허가증 제도 : 3종류

1) 오존층 파괴물질

기존의 3개 품목 83개 세목(HS코드 8단위기준)에서 1개 품목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였다.

<표> 2007년 오존층 파괴물질 적용품목

종류	품명	HS코드	단위
1	오존층 파괴 물질	29031910	Kg
		29033990	
		29034100	
		29034200	
		29034300	
		29034400	
		29034510	
		29034600	
		29034910	
		38247100	

2)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품목(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License of Dual-use Substances and Technologies)

국제무역 관련조례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용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사용물질이란 : 일반상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기 및 독금물 생산에도 전용될 수 있는 물질

-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원료 : 64개 세목
-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 : 41개 세목
- 방사성 화학물 : 8개 세목

※관련사이트 :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612/1167542125034.xls>

(2007년 중국의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적용품목)

3) 자동수입허가증 제도 : 신고제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廢紙) 등 총 902개 세목에 대해 자동허가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수입허가증발급은 정부의 심사허가대상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등록 및 발급(1-10일내)해 준다.

※관련사이트 :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612/1167556748405.xls>

(2007년 중국의 자동수입허가증 적용품목)

2. 수출허가증 제도 : 2종류

1) 수출상품허가증발급 : 면화, 원유, 실크 등 41개

수출시 총 41개 품목 375개 세목에 대해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허가증관리를 각각 시행한다.

— 수출쿼터허가증 : 19개 품목<옥수수, 쌀, 밀, 면화, 산 소(대홍콩·마카오), 산 돼지(대홍콩·마카오), 산 닭(대홍콩·마카오), 제재목, 실크, 석탄, 코크스, 원유, 정제유, 희토, 안티몬, 텅스텐 및 그 제품, 아연광, 주석 및 그 제품, 백은>

— 수출쿼터입찰 : 7개 품목(갈대 및 그 제품, 탄화규소, 형석, 활석, 마그네슘(鎂), 산화알루미늄(礬土), 감초 및 그 제품(甘草)).

※수출쿼터입찰 상품에 대해서는 입찰부서에서 발급한 《申领配额招标货物出口许可证证明书》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

— 수출허가증 적용품목 : 18개 품목(산 소 (홍콩·마카오 제외) , 산 돼지(홍콩·마카오 제외) , 산 닭 (홍콩·마카오 제외) , 냉동된

신선한 쇠고기, 냉동쇠고기, 냉동된 신선한 돼지고기, 냉동된 돼지고기, 냉동된 신선한 닭고기, 냉동된 닭고기, 오존층 파괴물질, 석랍(石蜡)、백금(가공무역으로 수출) 、아연 및 아연합금、일부희소금속、선풍기、자동차(부품포함) 및 샤시、자전거、모터바이크 및 엔진, 차체

주1) 옥수수, 쌀, 석탄, 원유, 정제유, 면화, 백은, 안티몬 및 그 제품, 텅스텐 및 그 제품 등 품목에 한해서 国营贸易

2) 3월 1일부터 중국은 자동차 제품(승용차, 상용차, 차체 및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

3) 임시로 수출이 가능하게 했던 규사(HS코드: 2505100000, 2505900000)에 대해 3월 1일부터 다시 수출금지

※ 관련사이트: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01/1167983230067.xls>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01/1167983812379.xls>
(2007년 중국의 수출허가증 적용품목)

2)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허가증(허가대상)

핵제품 및 관련기술, 미사일 및 관련기술, 컴퓨터 등 807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핵수출규제 품목 : 152개
- 핵 이중사용 및 관련기술 규제품목 : 162개
- 생물 이중사용 및 관련 설비와 기술수출 규제품목 : 144개
- 화학품 감시관리대상 품목 : 64개
- 화학품 및 관련설비와 기술수출 규제품목 : 37개
- 미사일 및 관련물품과 기술수출 규제품목 : 185개
- 독으로 제조되기 용이한 화학품 : 57개
- 컴퓨터 : 6개(HS코드 : 8471411000, 8471412000, 8471491000, 8471492000, 8471492000, 8471501000, 8471502000)

<별첨> : 2007년 수입상품 최대국세율 인하내역 (44개 품목)

	HS Code	상품명	'06년 최대국세율(%)	'07년 최대국세율(%)
1	08101000	신선 딸기	19.8	18.4
2	08129000	일시 저장처리한 과일과 견과류	28.6	27.7
3	22060000	기타 발효주	49.1	46.8
4	29173611	테레프탈산	8.6	7.6
5	29173619	기타 테레프탈산	8.6	7.6
6	32041100	분산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7.7	7.1
7	320412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7.7	7.1
8	32041600	반응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7.7	7.1
9	33049900	기초 화장품 제품류	12.8	9.7
10	33051000	샴푸	10.6	8.6
11	382555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10.0	6.5
12	39011000	폴리에틸렌 (비중 0.94미만)	9.1	7.8
13	39012000	폴리에틸렌 (비중 0.94 이상)	9.1	7.8
14	39021000	폴리프로필렌	8.6	7.6
15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8.6	7.6
16	39023010	프로필렌 공중합체	8.6	7.6
17	39023090	기타 프로필렌 공중합체	8.6	7.6
18	39029000	기타 프로필렌	8.6	7.6
19	39031100	발포성의 폴리스티렌	8.6	7.6
20	39031900	기타의 폴리스티렌 .	8.6	7.6
21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 (ABS)	8.6	7.6
22	39039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8.6	7.6
23	39041000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8.6	7.6
24	39042100	기타 염화비닐수지(가소화하지 않은 것)	8.6	7.6
25	39042200	기타 염화비닐수지 (가소화 한 것)	8.6	7.6
26	39045000	염화비닐리덴중합체	8.6	7.6
27	39071010	아세탈수지	8.6	7.6
28	39071090	기타 아세탈수지	8.6	7.6
29	39072000	폴리옥시프로필렌	8.6	7.6
30	39073000	폴리 페닐렌 옥사이드	8.6	7.6
31	39076011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이트	8.6	7.6
32	39076019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이트	8.6	7.6
33	39079100	기타 폴리에스테르 (불포화의 것)	8.6	7.6
34	39081011	폴리아미드 -6.6	8.6	7.6
35	39081019	기타 폴리아미드	8.6	7.6
36	39095000	폴리우레탄	8.6	7.6
37	39151000	에틸렌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8.6	7.6
38	39152000	스티렌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8.6	7.6
39	39153000	염화비닐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8.6	7.6
40	39159010	프로필렌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8.6	7.6
41	39159090	기타 플라스틱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8.6	7.6
42	39173900	기타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제품	8.6	7.6
43	39204300	전체 중량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8.6	7.6
44	392049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 중에서 전 중량의 6%미만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9.0	7.6
	평균		10.4	9.2